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기간

- ①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계약기간 이며,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 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
2. 계약 목적

-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,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등급별 2023년 월 한도액은 아래의 표 1와 같다.

<표 1>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금액(원)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

- ② 2023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의 표 2와 같다.

<표 2>

분류번호	분류	금액(원)	본인부담금(원)		
			15%	9%	6%
가-1	30분 이상	16,190	2,420	1,450	970
가-2	60분 이상	23,480	3,520	2,110	1,400
가-3	90분 이상	31,650	4,740	2,840	1,890
가-4	120분 이상	40,280	6,040	3,620	2,410
가-5	150분 이상	46,970	7,040	4,220	2,810
가-6	180분 이상	52,880	7,930	4,750	3,170
가-7	210분 이상	58,930	8,830	5,300	3,530
가-8	240분 이상	65,000	9,750	5,850	3,900

- ③ 2023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의 표 3와 같다.

<표 3>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	본인부담금(원)		
			15%	9%	6%
나-1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2,160	12,320	7,390	4,920
나-2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74,070	11,110	6,660	4,440
나-3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6,250	6,930	4,160	2,770

-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2일까지 별지 제3호 서 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
-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계좌로 10일 전에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⑥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- ⑦ 야간(18:00~22:00),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야간 20%, 심야 3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4.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기관의 권리와 의무

-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.
 - 1. 월 이용료 납부
 - 2.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 범위내 급여이용
 -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- 4. 수급자의 인적사항,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 - 5.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
 - 6. 기관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
- ②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.
 - 1.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 - 2.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
 - 3.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-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- 5.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- 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- 7.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

5. 계약의 해제

-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2. 기관에서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- 4.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2.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3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- 4.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5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6.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,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